

서울고등법원 2022. 4. 21 선고 2021나20453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부광득

피고, 피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강성용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4. 21.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19가합593175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5 지분에 관하여 2018. 11. 19.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E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9. 접수 제2110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다음 제2항에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중 6면 1행부터 7행까지 부분 ⇨ 삭제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보전채권으로 ① 원고들의 E에 대한 허위 상속세 신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② 원고들의 E에 대한 상속재산 무단처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③ 원고 A의 E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① 원고들의 E에 대한 허위 상속세 신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분의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

나. 제1심판결 중 9면 9행부터 11면 아래에서 8행까지의 각 “이 사건 주식” 부분

⇨ 모두 “이 사건 G 명의 주식”

다. 제1심판결 중 13면 아래에서 6행의 “이 법원의” 부분 ⇨ “제1심법원의”라. 제1심판결 중 13면 아래에서 1행부터 14면 1행까지의 “그대로 반환하기만 채무”

부분 ⇨ “그대로 반환하기만 하면 되는 채무”

마. 제1심판결 중 14면 3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부분 ⇨ “제1심 변론종결일”바. 제1심판결 중 17면 2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 부분 ⇨ “이 법원의 변론종결”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융자산은 전부 망인의 상속재산이거나 적어도 망인과 G가 공유하던 재산으로서 그중 망인의 지분 부분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데, G가 E와 피고의 가담 아래 이 사건 출연을 하면서 이 사건 금융자산 중 7,580,000,000원 부분을 무단으로 처분하여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E는 G, 피고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각 1,166,153,846원(= 7,580,000,000원 × 2/13 상속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 원고들의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무를 E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판단

1) 그러나 제1심의 변론 결과에 이 법원이 추가로 심리한 내용을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금융자산은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명의자인 G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피보전채권으로 원고들의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에 따라 E의 소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그러한 손해배상의 채무를 포함시키지 않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 A, B은, G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통하여 원고 A, B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G로부터 이 사건 출연을 받은 U의료재단을 상대로 하여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8086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654 사건, 대법원 2021다291927 사건), 이 사건 금융자산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갑51호증, 을8호증, 을15호증의 1, 2).

또한 원고 C도 U의료재단을 상대로 하여 같은 내용으로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0177 사건), 그 제1심에서 이 사건 금융자산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갑52호증, 을12호증),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629 사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현중, 판사 방웅환, 판사 정윤희

목 록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 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784.86㎡

2층 784.86㎡

3층 784.86㎡

4층 784.86㎡

5층 784.86㎡

6층 784.86㎡

7층 784.86㎡

8층 784.86㎡

9층 784.86㎡

10층 784.86㎡

11층 784.86㎡

12층 784.86㎡

13층 784.86㎡

14층 784.86㎡

15층 784.86㎡

옥탑 115.08㎡ 지하층

786.06㎡

부속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중간 기계실

지하층 755.70㎡ 1층

20.07㎡

부속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공중 변소

지하층 90.00㎡

부속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중앙공급실 및

관리사무소

지하층 1179.40㎡

1층 246.00㎡ 2층 274.8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 72674㎡

(건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8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96.21㎡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1984분의 26.280 팔.

